

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5일
신 고 인	성 명 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		
	전 화 번 호		생년월일	
	주 소			
업 종			등 록 종 별	
등 록 번 호			사업등록일자	
변 경 내 용	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변 경 일 자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구 비 서 류	1.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업등록증(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			수수료
				5,000원